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시·도지부 규정

2011. 12. 24. 제정

2017. 12. 2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이하 “본회”라 칭한다) 정관 제4조 규정에 의해 지부로써 설립되는 시·도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주소) 본 회의 시·도 지부를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이하 위원회)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 Special Olympics Korea(으)로 하고, 영문 약칭은 ○○ SOK로 하며, 사무소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3조(설치목적) 시·도위원회는 전 세계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스페셜올림픽운동(Special Olympics movement)의 기본이념과 철학에 따라 한국의 지적자폐성장아인들이 하여금 스페셜올림픽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운동경기와 각종 행사에 참여토록 하여 그들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즐거움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가족 구성원과 지역사회, 나아가 지구촌 구성원들과도 우애를 나누고 재능을 평가받게 하여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시·도스페셜올림픽코리아(이하 “시·도 SOK”라 칭한다)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스페셜올림픽 국내, 국제대회 및 동·하계 세계대회 개최
2. 스페셜올림픽 동·하계 세계대회, 국제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적 경기대회 참가
3. 스페셜올림픽 체육 및 건강프로그램 보급
4. 지적·자폐성장아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페셜올림픽 경기종목 지도
5.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세미나 및 경기종목 강습회 개최
6. 지적·자폐성장아인들의 체육·건강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지원
7. 스페셜올림픽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영상물 제작
8. 기타 스페셜올림픽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시·도위원회는 당해지역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 ① 시·도위원회는 본회 정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대의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 ② 본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가. 시·도위원회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할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시·도위원회의 임원의 선임 및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시·도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위원회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시·도위원회는 연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하며, 회비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가맹 및 탈퇴)

- ① 본회의 시·도위원회로 가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시·도위원회의 본회 가맹·탈퇴에 관한 규정은 본회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 ① 시·도위원회의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시·도위원회의 임원의 수는 해당 시·도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의 선임, 보선 및 임기는 해당 시·도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②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은 이사에 포함된다.

제10조(각종위원회)

- ① 시·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③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시·군·구위원회

제14조(시·군·구위원회)

① 각 시도지부 산하에 시·군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지부(위원회) 산하에는 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조직구성) 시·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로써 구성한다.

1. 해당지역내 거주하는 자로서 스포셜올림픽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2. 선수대표, 가족 등

제16조(임원구성)

- ① 시·군·구위원회의 임원의 정수는 당해 시·군·구위원회의 정관에 정하며, 해당 각 시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회장 및 이사는 추대할 수 있다.

제17조(사업) 시·군·구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각종 스포셜올림픽경기대회의 개최·주관 및 참가
2. 기타 스포셜올림픽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상급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18조(조직운영) 시·군·구위원회의 조직운영은 해당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19조(자산의 구분) 시·도위원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유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회비
4. 본회 지원금
5.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6. 사업 수익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제20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기금 및 적립금)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로 한다.

제2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회계감사)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도위원회 또는 사·군·구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제6장 사 무 처

제24조(사무처)

- ① 사·도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관장하며, 직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직제 및 규정)

- ①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해당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사무처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한다.



Special Olympics
Korea

부 칙 (2011.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